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84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김예지 · 박덕흠 · 서미화
고동진 · 송석준 · 조정태
유용원 · 김형동 · 최형두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노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생활·자립지원 및 재산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

함.

따라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한 보상과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등의 권리를 보장하며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피해자등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신청과 지급결정,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2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

사.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수용시설 등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를 말한다.
4. “유족”이란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피해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피해자등의 권리) 피해자와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기억, 추모, 애도를 하거나 받을 권리
4. 배상·보상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받을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참여

할 권리

7.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등의 권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3. 국가폭력 사건 피해회복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의결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의결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의결 대상인 안건에 관하여 증언·감정 또는 자문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가. 의료지원 서비스
 - 나. 생활지원 서비스
 - 다. 자립정착 지원 서비스
 - 라.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및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피해 및 후유증의 정도, 수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사실조사) ① 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조사를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하려는 사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피해자등의 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보상기준의 결정, 추모·기념사업 및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피해자,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게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것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보상등

제12조(보상등의 신청) ① 배상 또는 보상(이하 “보상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등의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송달받은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질병, 장애, 거주불명, 국외거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등의 지급결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의결로써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

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보상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보상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심의) ①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4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6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등의 지급 등) ① 제14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보상등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에 따른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보상등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보상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등과의 관계)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시금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보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등 계속적·정기적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차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상등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이하 “임시지급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확정된 보상등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등이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19조(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정 시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보상금등의 관리) 피해자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이용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의 연계, 신탁의 이용 지원 등 보상금등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금등의 보호) ① 보상금등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4장 명예회복 및 사회적 치유

제23조(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 ① 심의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
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령·제도의 개선
2. 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개선
4. 그 밖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
다.

제24조(추모·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
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2. 위령·추모행사 개최
3. 기록물 수집·전시
4.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추모·기념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5조(차별·혐오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피해회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2. 제2항에 따른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의 지원 및 그 종사자 교육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2. 자립생활 지원
3. 사회적 활동 지원
4. 법률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한 업무

③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는 피해자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 및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7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심의위원회가 아닌 자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제3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2027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임명·위촉, 사무국의 설치, 심의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개정·공포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위

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